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조사

2024. 11



INCHEO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Contents

SECTION I. 조사개요	2
SECTION II. 조사결과	3
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3
2.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 애로사항	7
3. 정책과제	8
SECTION III. 요약 및 시사점	11

그림 목차		
<그림 1> 안전보건확보체계 구축 현황		3
<그림 2> 안전보건예산 현황		4
<그림 3>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현황		5
<그림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의식 변화		5
<그림 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 환경 개선 여부		6
<그림 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중 부담 사항		7
<그림 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담 사항		8
<그림 8>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한 기업 지원 정책 인식 여부		8
<그림 9>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한 기업 지원 정책 활용 여부		8
<그림 10>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9
<그림 11> 중대재해처벌법 중 입법 보완이 시급한 사항		9

I 조사 개요

○ 조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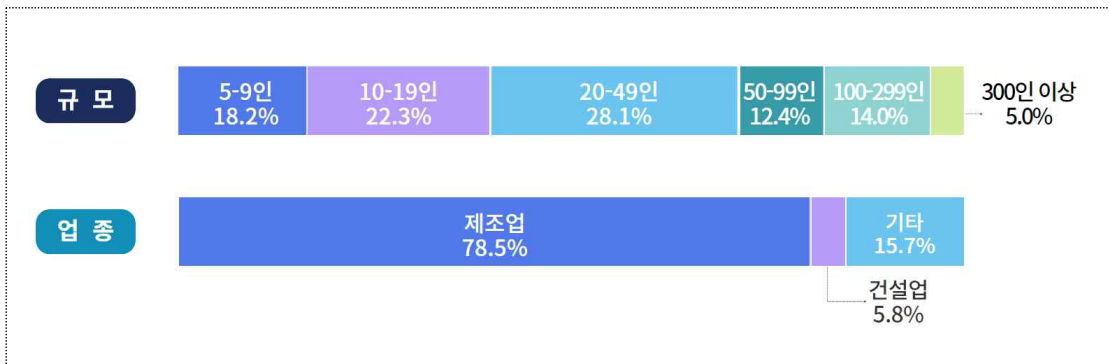
-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조사기간 : 2024. 4. 8(월) ~ 5. 30(목)

○ 조사방법 : 현장 설문조사 및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응답기업 : 인천지역 중소기업 121개사(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응답기업 분포



○ 응답항목 : 13개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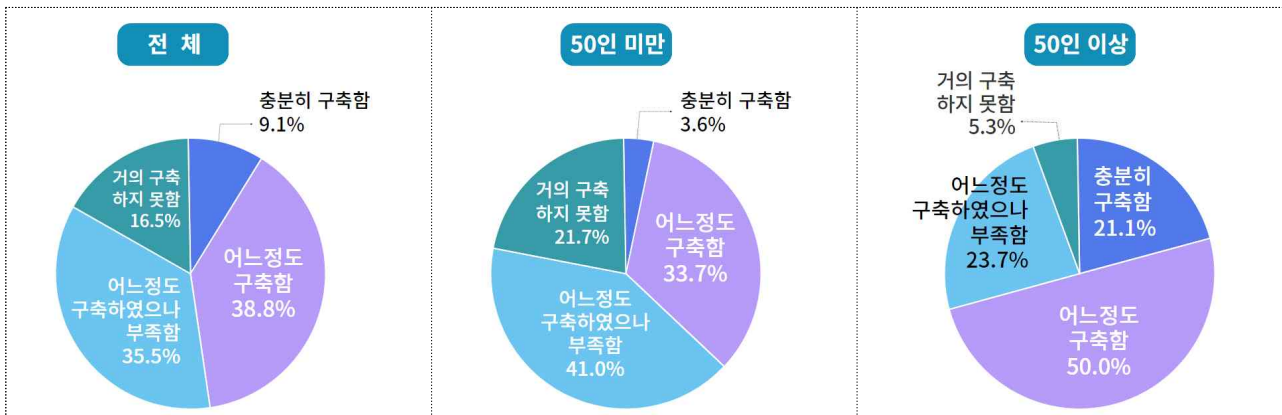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애로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
- 기타 건의사항 등

II 조사 결과

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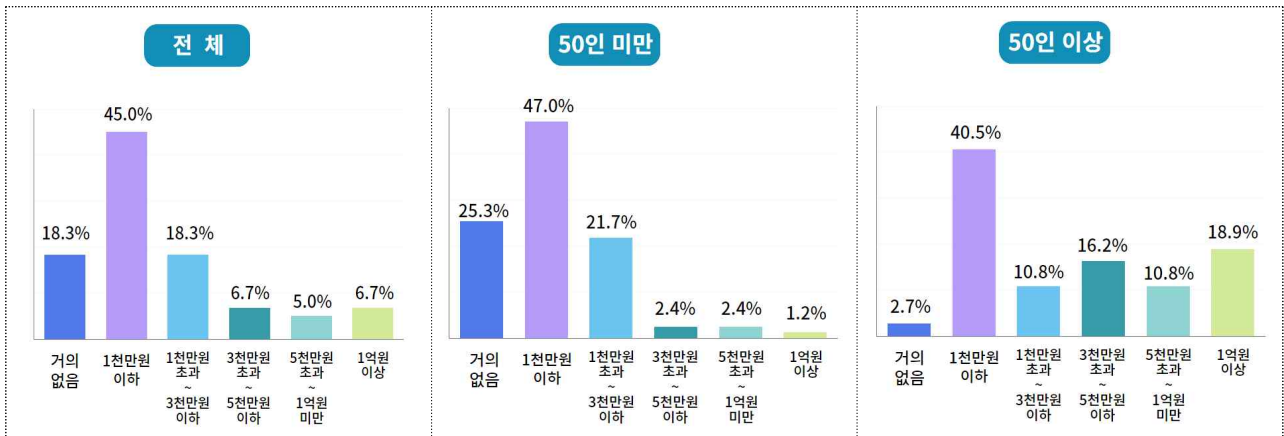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인천지역 기업 121개사를 대상으로 한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조사’ 결과,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는 현재 시점에도 인천지역 기업들의 52.0%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이행해야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어느정도 구축하였으나 부족함’(35.5%), ‘거의 구축하지 못함’(16.5%)) 한편, 응답기업의 47.9%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음.(‘어느정도 구축함’(38.8%), ‘충분히 구축함’(9.1%))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은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보임.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된 50인 미만 기업은 62.7%가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법 적용 2년이 지난 50인 이상 기업조차도 29.0%가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50인 미만 : ‘구축에 어려움 느낌’(62.7%) (‘어느정도 구축하였으나 부족함’(41.0%), ‘거의 구축하지 못함’(21.7%)) > ‘구축함’(37.3%) (‘어느정도 구축함’(33.7%), ‘충분히 구축함’(3.6%))
 - 50인 이상 : ‘구축함’(71.1%) (‘어느정도 구축함’(50.0%), ‘충분히 구축함’(21.1%)) > ‘구축에 어려움 느낌’(29.0%) (‘어느정도 구축하였으나 부족함’(23.7%), ‘거의 구축하지 못함’(5.3%))

<그림 1> 안전보건확보체계 구축 현황



- 전체 응답기업의 **안전보건예산**(인건비, 조직운영비, 안전시설, 보호장비, 교육비, 컨설팅비 등) 규모를 보면, ‘1천만원 이하’로 편성한 기업이 45.0%로 가장 많았으며,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18.3%),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6.7%), ‘1억원 이상’(6.7%), ‘5천만원 초과~1억원 미만’(5.0%) 순으로 나타남. 안전보건예산이 ‘거의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18.3%로 조사됨.
- 특히 안전보건예산은 기업 규모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50인 미만 기업의 47.0%가 안전보건예산은 ‘1천만원 이하’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거의 없는’ 기업도 25.3%로 나타남.
- 반면, 50인 이상 기업은 97.2%가 안전보건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음. 또한 예산 규모는 ‘1천만원 이하’가 40.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억원 이상’ 예산을 편성한 기업도 18.9%를 차지함.
 - 50인 미만 : ‘1천만원 이하’(47.0%) > ‘거의 없음’(25.3%)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21.7%)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2.4%) > ‘5천만원 초과~1억원 미만’(2.4%) > ‘1억원 이상’(1.2%)
 - 50인 이상 : ‘1천만원 이하’(40.5%) > ‘1억원 이상’(18.9%)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16.2%)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10.8%) > ‘5천만원 초과~1억원 미만’(10.8%) > ‘거의 없음’(2.7%)

<그림 2> 안전보건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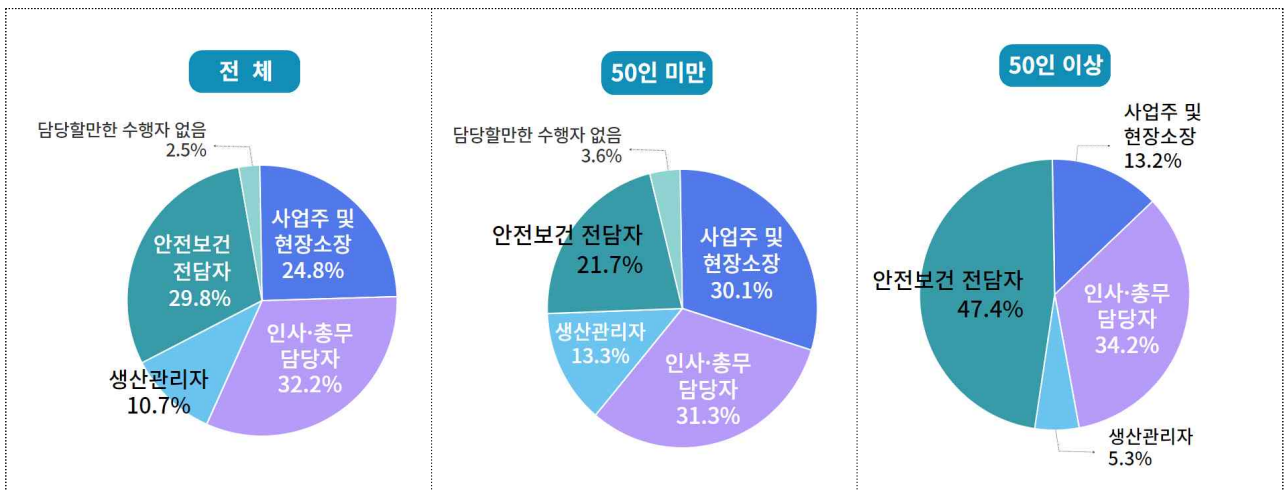


- 안전보건업무 **전담 인력**의 경우 전체 응답기업을 살펴보면,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기업은 29.8%에 그쳤음. 응답기업의 32.2%는 ‘인사·총무 담당자’가 겸직, 24.8%는 ‘사업주 및 현장소장’이 직접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거나, ‘생산관리자’가 겸직(10.7%)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담당할만한 수행자가 없는’ 기업도 2.5% 있었음.

○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에 있어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50인 이상’ 기업은 47.4%가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었으나, ‘50인 미만’ 기업은 21.7%만이 전담인력을 두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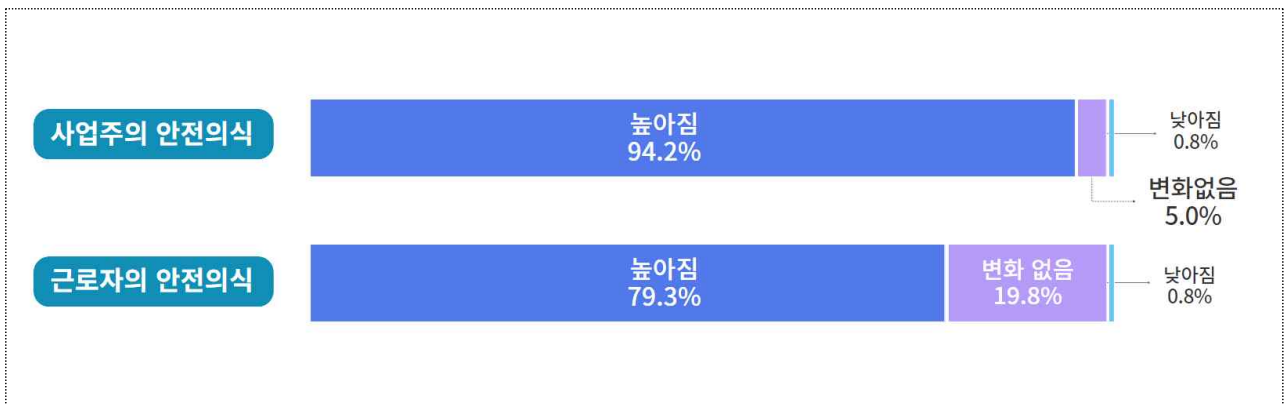
- 50인 미만 : ‘인사·총무 담당자’(31.3%) > ‘사업주 및 현장소장’(30.1%) > ‘안전보건 전담자’(21.7%) > ‘생산관리자’(13.3%) > ‘담당할만한 수행자 없음’(3.6%)
- 50인 이상 : ‘안전보건 전담자’(47.4%) > ‘인사·총무 담당자’(34.2%) > ‘사업주 및 현장소장’(13.2%) > ‘생산관리자’(5.3%)

<그림 3>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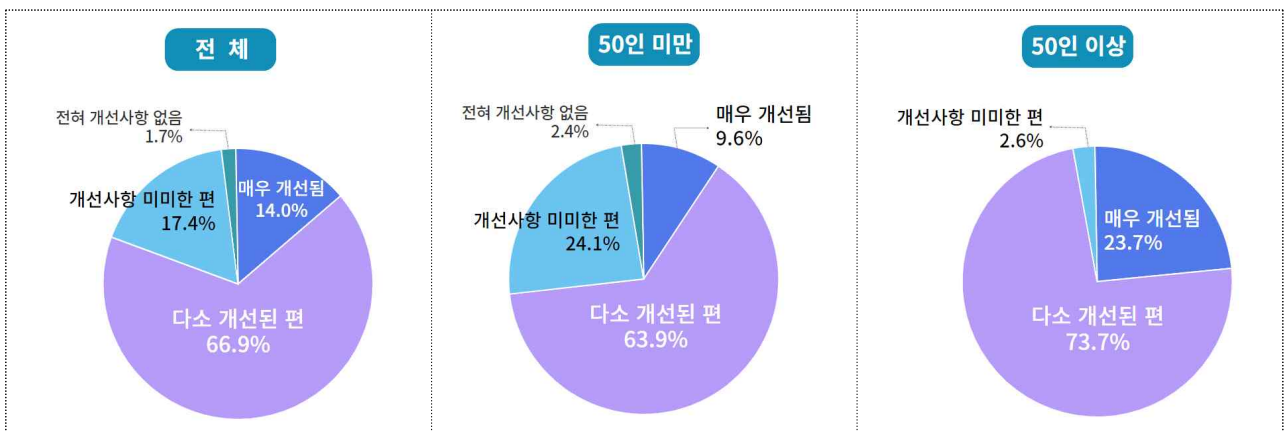
○ 인천지역 기업들의 94.2%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79.3%가 ‘근로자의 안전의식도 높아졌다’고 응답함.

<그림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의식 변화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업장의 안전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80.9%(‘다소 개선된 편’(66.9%), ‘매우 개선됨’(14.0%))를 차지함. ‘개선사항이 미미한 편’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7.4%, ‘전혀 개선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1.7%였음.
- 사업장의 안전 환경 개선 수준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른 것으로 조사됨.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73.5%가 안전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으나, ‘개선사항이 미미한 편’이라는 응답도 24.1%로 나타남. 한편,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97.4%가 안전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개선사항이 미미한 편’이라는 응답은 2.6%에 불과하였음.
 - 50인 미만 : ‘개선됨’(73.5%)(‘다소 개선된 편’(63.9%), ‘매우 개선됨’(9.6%)) > ‘개선사항 미미한 편’(24.1%) > ‘전혀 개선사항 없음’(2.4%)
 - 50인 이상 : ‘개선됨’(97.4%)(‘다소 개선된 편’(73.7%), ‘매우 개선됨’(23.7%)) > ‘개선사항 미미한 편’(2.6%)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은 사업장의 안전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예산, 인력 등의 제약으로 법 준수를 위한 안전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음. 특히, 50인 미만 기업은 자체적으로 인력, 시설·설비, 매뉴얼 등을 마련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림 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 환경 개선 여부



2.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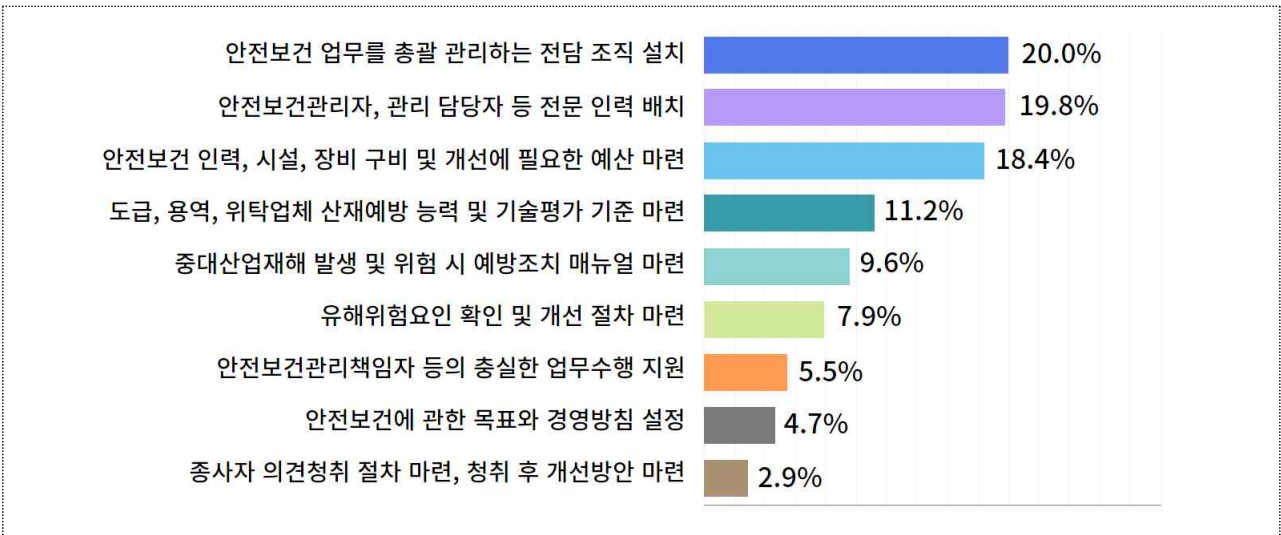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용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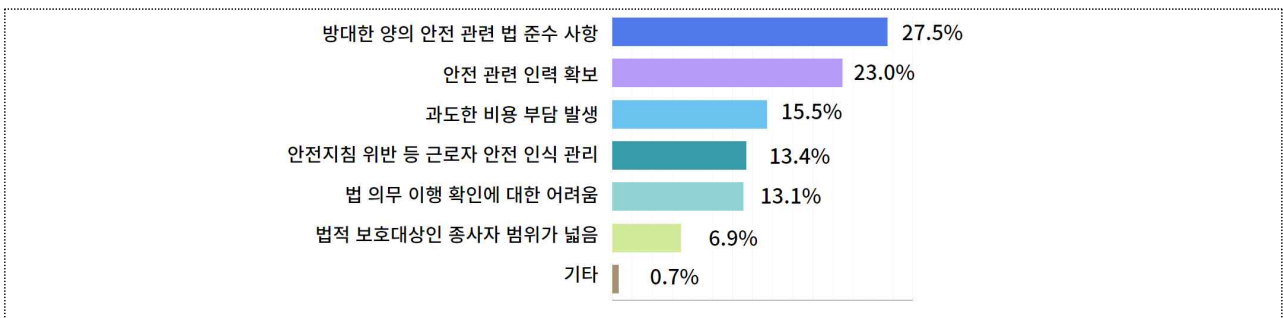
-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사항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20.0%)를 꼽았음. 다음으로는 ‘안전보건관리자, 담당자 등 전문 인력 배치’(19.8%),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마련’(18.4%), ‘도급, 용역, 위탁업체 산재예방 능력 및 기술평가 기준 마련’(11.2%) 등 순으로 나타남.

<그림 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중 부담 사항



-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응답기업의 27.5%는 ‘방대한 양의 안전 관련 법 준수 사항’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안전 관련 인력 확보’(23.0%),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15.5%)도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었음. 이어,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 인식 관리’(13.4%), ‘법 의무 이행 확인에 대한 어려움’(13.1%), ‘법적 보호대상인 종사자 범위가 넓음’(6.9%) 등의 애로도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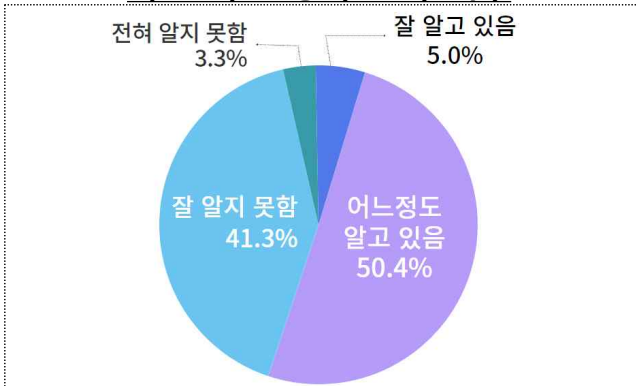
<그림 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담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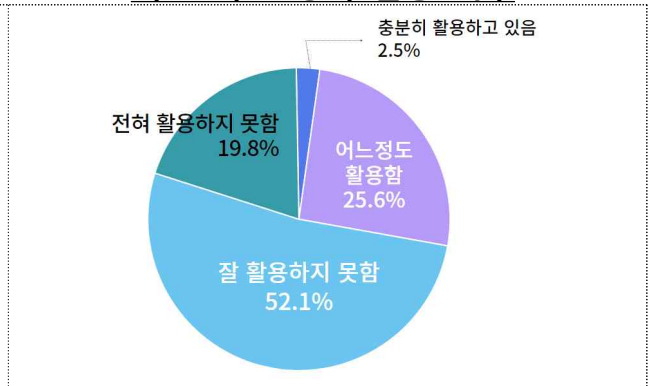
3. 정책과제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하여 응답기업의 55.4%는 ‘알고 있었으나’(‘어느정도 알고 있음’(50.4%), ‘잘 알고 있음’(5.0%)), 44.6%의 기업은 지원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잘 알지 못함’(41.3%), ‘전혀 알지 못함’(3.3%))고 응답함.
- 이어, 응답기업의 71.9%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잘 활용하지 못함’(52.1%), ‘전혀 활용하지 못함’(19.8%))으로 조사됨. 한편,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도 28.1%(‘어느 정도 활용하는 기업’(25.6%), ‘충분히 활용하고 있음’(2.5%))로 나타남.

<그림 8>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한 기업 지원 정책 인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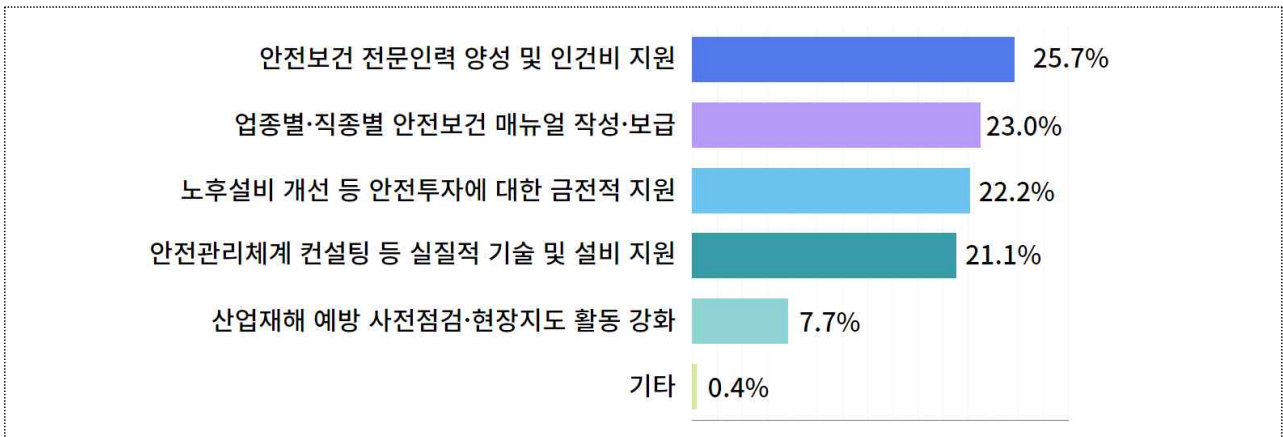


<그림 9>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한 기업 지원 정책 활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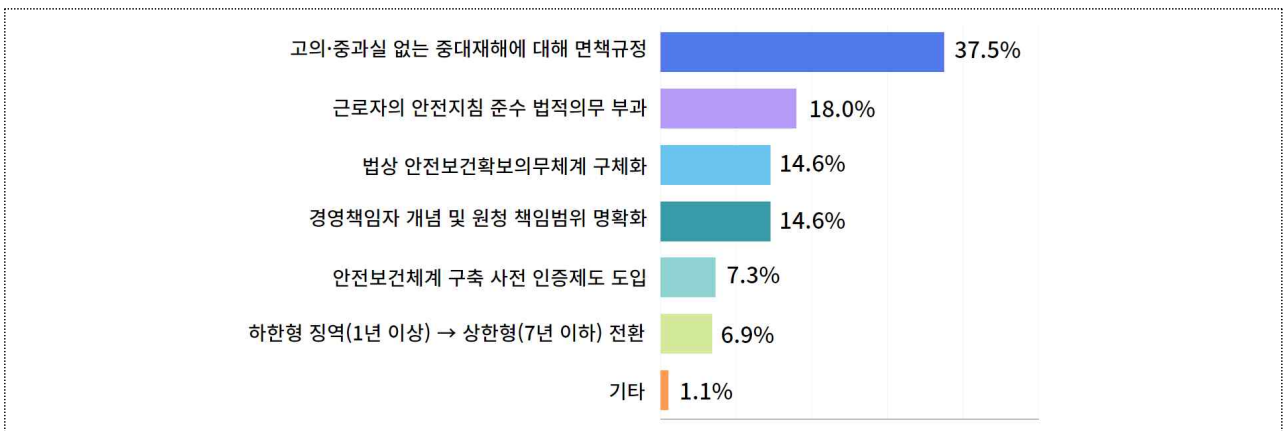
- 인천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인건비 지원’(25.7%)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보급’(23.0%),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22.2%), ‘안전관리체계 컨설팅 등 실질적 기술 및 설비 지원’(21.1%), ‘산업재해 예방 사전점검·현장지도 활동 강화’(7.7%) 등의 정책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10>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중 **입법 보완이 시급한 사항**으로는 응답기업의 37.5%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 면책규정’이라고 응답함. 이외에도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18.0%), ‘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체계 구체화’(14.6%),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14.6%), ‘안전보건체계 구축 사전 인증제도 도입’(7.3%), ‘하한형 징역(1년 이상)→상한형(7년 이하) 전환’(6.9%) 등도 입법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중대재해처벌법 중 입법 보완이 시급한 사항



○ 기타 의견

의견

- 업종·규모별 중대재해처벌법 차등 적용 필요
- 안전 인증 취득, 교육, 안전 설비 투자 등을 위한 비용 지원
- 근로자에게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
- 50인 이상 사업장은 정부 지원이 거의 없어 50인 이상 사업장도 안전 관련 지원 확대
- 개별 기업 맞춤형 매뉴얼 및 인력(교육, 인건비 등) 지원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매뉴얼(영상 등) 배포 필요

Ⅲ 요약 및 시사점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인천지역 기업 121개사를 대상으로 한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조사’ 결과,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은 현재 시점에도 인천지역 기업들의 52.0%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였어도 부족한 수준’이거나, ‘거의 구축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응답기업의 47.9%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은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보임.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된 50인 미만 기업은 62.7%가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법 적용 2년이 지난 50인 이상 기업조차도 29.0%가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응답기업의 **안전보건예산**(인건비, 조직운영비, 안전시설, 보호장비, 교육비, 컨설팅비 등) 규모를 보면, ‘1천만원 이하’로 편성한 기업이 4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로 편성한 기업이 18.3%를 차지함. 또한, 안전보건예산이 ‘거의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18.3%로 조사됨.*
 -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6.7%) > ‘1억원 이상’(6.7%) > ‘5천만원 초과~1억원 미만’(5.0%)
 - 특히 안전보건예산도 기업 규모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50인 미만 기업**의 47.0%가 안전보건예산은 ‘1천만원 이하’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거의 없는’ 기업도 25.3%로 나타남.
 - 반면, **50인 이상 기업**은 97.2%가 안전보건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음. 또한 예산 규모는 ‘1천만원 이하’가 4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1억원 이상’ 예산을 편성한 기업도 18.9%를 차지함.
- **안전보건업무 전담 인력**의 경우 전체 응답기업을 살펴보면,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기업은 29.8%에 그쳤음. 나머지 응답기업들은 겸직을 하고 있거나 담당자가 없는 경우도 있었음.*
 - * ‘인사총무 담당자’(32.2%) > ‘사업주 및 현장소장’(24.8%) > ‘생산관리자’(10.7%) > ‘담당할만한 수행자가 없음’(2.5%)
 -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에 있어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임. **50인 이상 기업**은 47.4%가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었으나, **50인 미만 기업**은 21.7%만이 전담인력을 두고 있었음.

- 인천지역 기업들의 94.2%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79.3%가 ‘근로자의 안전의식도 높아졌다’고 응답함.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업장의 안전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80.9%를 차지함. ‘개선사항이 미미한 편’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7.4%, ‘전혀 개선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1.7%였음.
 - 사업장의 안전 환경 개선 수준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른 것으로 조사됨.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73.5%가 안전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으나, ‘개선사항이 미미한 편’이라는 응답도 24.1%로 나타남. 한편,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97.4%가 안전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개선사항이 미미한 편’이라는 응답은 2.6%에 불과하였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은 사업장의 안전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예산, 인력 등의 제약으로 법 준수를 위한 안전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음. 특히, 50인 미만 기업은 자체적으로 인력, 시설·설비, 매뉴얼 등을 마련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기업에서는 법 대응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사항**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20.0%)를 꼽았음. 다음으로는 ‘안전보건관리자, 담당자 등 전문 인력 배치’(19.8%),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마련’(18.4%) 등이 나타남.
-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응답기업의 27.5%는 ‘방대한 양의 안전 관련 법 준수 사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안전 관력 인력 확보’(23.0%),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15.5%)도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었음. 이어,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 인식 관리’(13.4%), ‘법 의무 이행 확인에 대한 어려움’(13.1%) 등의 애로도 조사됨.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하여 응답기업의 55.4%는 ‘알고 있었으나’, 44.6%의 기업은 지원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함.
- 이어, 응답기업의 **71.9%**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한편,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도 28.1%로 나타남.

- 인천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인건비 지원’(25.7%)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보급’(23.0%),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22.2%), ‘안전관리체계 컨설팅 등 실질적 기술 및 설비 지원’(21.1%) 등의 정책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중대재해처벌법 중 **입법 보완이 시급한 사항**으로는 응답기업의 37.5%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 면책규정’이라고 응답함. 이외에도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18.0%), ‘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체계 구체화’(14.6%),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14.6%), ‘안전보건체계 구축 사전 인증제도 도입’(7.3%), ‘하한형 징역(1년 이상)→상한형(7년 이하) 전환’(6.9%) 등도 입법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장비 구비·시설 확충부터 인력 채용, 전담 부서 신설까지 기업에서는 안전보건 예산 마련, 인력 확보 등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법을 준수하는데 한계가 있음. 특히, 50인 미만 기업은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임.
- 먼저,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함. 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인건비 지원, 노후 설비 개선·안전 시설 확충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업종·직종별 기업 맞춤형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배포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함.
-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 면책규정을 신설,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대한 사전 인증제도 도입 등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입법보완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만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인력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안전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함.